

충청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김꽃임 의원 등 8인

2. 발의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2년 11월 8일

○ 회부일자 : 2022년 11월 8일

3. 제안이유

○ 도민의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 일·생활 균형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7조)

○ 일·생활 균형 관련 사업을 법인·단체 등에 위탁(안 제8조)

5. 검토의견(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

가. 제출배경

○ 충청북도 도민들의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 검토내용

- 안 제4조는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관련 캠페인 확산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임
- 안 제7조는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8조는 도지사가 일·생활 균형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정책이 내실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함

다. 종합 검토의견

- ‘충청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민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살기 좋은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한 적절한 입법이라고 생각됨
- 그동안 조례 제정을 위해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와 협의, 재정지출에 따른 예산담당관실과 협의, 상위법 저촉 여부 검토를 위한 법무혁신담당관실과 협의,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과 협의,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등 행정적 절차를 추진하였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어 입법의 필요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